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-226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관	다올투자증권

2. 조치내용

○ **(원안)**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'자본시장법')」 제71조에 따른 일반투자자에 대한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권유 금지 위반과태료 240백만원 부과

○ **(증선위 수정심의)** 「자본시장법」 제71조에 따른 일반투자자에 대한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권유 금지 위반 과태료 240백만원에서 200백만원으로 수정 심의

* 일반투자자에 대한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권유 금지 위반 위반 : 중대 → 경미

○ **(금융위 수정의결)** 「자본시장법」 제71조에 따른 일반투자자에 대한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권유 금지 위반 과태료 200백만원에서 140백만원으로 수정 의결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1. 일반투자자에 대한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권유 금지 위반

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중 증권의 발행인이 파산할 경우 타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거나, 투자적격 등급에 미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용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채권, 자산유동화증권, 기업어음증권 및 이에 준하는 고위험 채무증권(이하 “고위험 채무증권 등”이라 한다)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됨에도,

- 회사는 ####.##.##.~ ####.##.##. 기간 중 후순위 대주로 참여한 사업장의 대출채권 유동화를 위해 SPC를 설립하고 대출채권을 기초로 SPC가 발행한 무등급 사모사채를 일반투자자 O명을 대상으로 매매 권유하여 판매(총 O건, □□억원)하였고, 이로 인해 회사가 보유한 PF 후순위 대출채권의 미상환 위험을 일반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

나. 근거법규

-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71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제7호, 제449조(과태료) 제1항 제29호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8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제5항 제14호, 제39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[별표 22] 2. 터목, 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4-20조 제1항 제5호 자목